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 解説

李 京 三

(韓國電力(株) 企劃管理部 法規課長)

1. 序 言

우리나라는 그동안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遂行, 國民所得의 增大 및 農漁村電化등에 따라 電力需要가 年平均 17% 이상 急伸張을 계속하였고, 앞으로도 政府의 重化學工業育成 政策과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으로 이와같은 增加趨勢가 繼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電力需要의 增加에 需給을 맞추기 爲해서는 電源設備의 持續的인 擴充과 迅速한 建設推進이 切實히 要望되고 있다.

그러나 電源開發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建設立地의 確保에 따르는 現行 法令上의 許多한 制約과 煩雜한 各種 認·許可 節次로 適期 建設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으며, 尙大한 所要資金의 調達에 많은 險路를 겪고 있어 이러한 與件下에서는 電源開發事業의 效率의 推進이 심히 어려운 狀況에 處해 있다.

따라서 政府는 電源開發事業의 重要性에 立脚하여 電源開發事業施行에 관한 모든 關聯事項을 政府關係部處가 一括 審議 調整한후 方針을 決定하고 事業施行에 따른 節次를 大幅 簡素化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電源開發에 關한 特例法의 制定을 積極 推進하여 第100次 定期國會의 議決을 거쳐 1978. 12. 5 부로 公布함으로써 1979. 1. 1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아울러 同法 施行을 爲한 大統領令도 1978年度 第88次 國務會議의 議決과 大統領의 裁可를 받아 1978. 12. 30 부로 公布되어 法施行과 同時에 施行하게 되었다.

2. 主要内容

가) 適用對象

이 法의 適用對象은 發電 및 送·變電設施의 設置 및 改良으로 하였다. (法第2條) 따라서 配電設備工事は 除外되며 發電 및 送·變電設備工事中 維持補修工事は 適用對象이 아니다.

나) 電源開發事業者

電源開發事業은 韓國電力株式會社가 施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動力資源部 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韓國電力株式會社 이외의 者로 하여금 電源開發事業의 一部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法第3條)

다만, 이 경우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電氣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電氣事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令第4條)

다) 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

電源開發事業施行에 關한 關聯事項을 政府關係部處間에 一括 協議 調整하기 爲하여 動力資源部 次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關係部處 擔當次

◆ 電源開發에 關한 特例法 解説

官補 또는 企劃管理室長을 委員으로 하는 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를 構成·運營토록 하였으며, 그 主要機能은 다음과 같다.

- ① 電源開發事業施行에 따른 各種 認·許中 一括審議가 가능한 것에 대한 審議·調整
- ② 電源開發事業施行에 따른 關聯公共設施의 設置 및 費用負擔에 關한 事項
- ③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의 指定에 關한 事項
- ③ 其他 電源開發事業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라) 電源開發事業 實施計劃의 承認·告示
 電源開發事業者가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그 實施計劃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動力資源部長官은 關係部處와의 協議와 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承認·告示하게 된다.

이로써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은 政府案으로 確定되고 電源開發事業者는 이에 따라 迅速한 事業推進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實施計劃을 作成·承認하는 目的이 諸般關聯事項을 迅速히 決定하고 이에 따른 節次

〈別表〉 電源開發事業施行에 따른 各種 認·許可 一覽表

省 略 될 認 許 可		存 続 認 許 可	
認 許 可 名 칭	적 용 법	認 許 可 名 칭	적 용 법
1. 事業許可事項變更許可	電氣事業法第6條	1. 工事計劃認可	電氣事業法第30條
2. 都市計劃施設決定	都市計劃法第12條	2. 他人土地使用許可	電氣事業法第64條
3. 都市計劃事業施行許可	都市計劃法第24條	3. 原子爐設置許可	原子力法第20條
4. 公有水面埋立免許	公有水面埋立法第4條	4. 國有財產使用收益許可	國有財產法第24條
5. 用途地域 또는 用途區域內行爲許可	國土利用管理法第15, 16條	5. 公有財產使用收益許可	地方財政法第57, 57조의 2
6. 農地開發促進地域內行爲許可	農地擴大開發促進法第8條	6. 開發制限區域內行爲許可	都市計劃法第21條
7. 農地轉用許可	農地擴大開發促進法第53條 農地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第4條	7. 土地收用裁決	土地收用法第25條
8. 砂防指定地解除	砂防事業法第20條의 2	8. 軍事施設保護區域內行爲許可	軍事施設保護法第5條
9. 許可其他處分에 關한 協議	軍事施設保護法第7條	9. 建築許可	建築法第5條
10. 國有林貸付許可	山林法第37條	10. 危險物貯藏所 등의 設置許可	消防法第15條
11. 伐採 등의 許可	山林法第10, 24, 48條 林産物 團束에 關한 法律第2條	11. 航空障礙物設置許可	航空法第40條
12. 事業認定	土地收用法第14條	12. 鐵道橫斷承認	鐵道法第76條
13. 道路工事施行許可	道路法第34條	13. 發破許可	銃砲火藥類團束法第14條
14. 道路占用許可	道路法第40條	14. 排出施設設置許可	環境保全法第15條
15. 私道開設許可	私道法第4條	15. 改葬許可	埋葬 및 墓地등에 關한 法律第16條
16. 河川工業施行許可	河川法第23條	16. 其 他	
17. 河川占用許可	河川法第25條		
18. 公有水面占用許可	公有水面管理法第4條		
19. 專用水道敷設認可	水道法第26條		
20. 公園區域占用使用許可	公園法第16條		
21. 公園保護區域占用 使用許可	公園法第19條의 2		

◆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 解説

를 簡素化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既存 電源設備區域 안에서 施行하는 工事 또는 個別的인 認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工事等은 實施計劃의 作成 承認對象에서 除外된다.

마) 認·許可의 擬制

電源開發事業者가 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은 경우에는 當該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에 따르는 17個 法律에 의한 21種의 許可·認可·免許·決定 또는 認定을 받았거나 協議를 한 것으로 본다.

(法第6條第1項) (別表 參照)

電源開發事業의 適期施行을 爲하여 가장 重要한 것은 用地의 確保라 할 수 있는 바 立地에 관한 各種 制約과 이에 수반되는 認·許可 節次의 煩雜으로 工期遲延을 招來하는 事例가 許多한 바 本法의 施行으로 그 節次를 大幅簡素化하여 迅速한 推進이 可能하게 된 것이다.

바) 讓渡所得稅 등의 免除

現行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은 土地收用法 其他 法律에 의한 收用に 의하여 賣渡한 경우에 한하여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하고 있다.

그런데 本法은 電源開發事業區域 안에 있는 土地등을 電源開發事業者에게 提供한 者에 대하여는 協議에 의하여 賣渡한 경우에도 收用に 의한 買收로 보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토록 하여 用地提供者를 保護하고 用地의 買收를 促進할 수 있게 하였다.

(法第6條第2項)

사) 國公有地の 處分制限

電源開發事業區域 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는 電源開發事業 以外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其他 處分을 할 수 없도록 하고 電源開發事業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어 用地의 確保와 取得節次를 簡素化하였다. (法第8條)

아)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의 指定·告示

國家産業의 急速한 發展과 미좁은 國土與件으로 보아 向後 電源立地의 確保는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電力의 圓滑한 供給與否가 國家産業發展의 關鍵임을 勘察할때 電源立地의 確保는 必須 不可缺한 것이다.

따라서 本法은 電源立地의 事前確保策을 規定하고 있다.

即, 長期電源開發計劃에 反映되었거나 其他 必要한 경우, 電源開發事業者의 申請으로 動力資源部長官이 關係部處와의 協議와 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告示할 수 있도록 하였다.

(法第11條第1項, 第2項 및 第3項)

이 경우 土地所有者가 電源開發 事業施行에 支障을 招來할 行爲(예컨대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의 개간·굴착 등)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行爲의 許可實行은 動力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므로 그 行爲에 制約을 받게 된다.

또한 同豫定區域 안의 國公有地는 處分制限을 받게 된다. (法第11條第4項)

다만, 土地所有者의 財產權이 長期間 制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補償하기 爲하여 電源開發事業者는 同豫定區域 안에서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기 前이라도 土地所有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土地등을 지체없이 買收하도록 規定하였다. (法第12條)

자) 移住對策의 樹立施行

本法은 電源開發事業用地를 提供한 者에 대하여 電源開發事業者가 移住對策을 樹立 施行할 것을 義務化함으로써 用地提供者에 대한 保護規定을 두고 있다.

아울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移住者의 住宅地의 造成 및 住宅의 建設을 위하여 他에

우선하여 國民住宅資金을 支援하도록 하였다.
(法第10條)

차) 公共設施의 優先設置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告示가 있을 때에 는 電源開發事業과 關聯되는 道路·橋梁·港灣·水道·鐵道·通信施設 및 下水道等의 公共設施은 主管關係行政廳이 他事業에 우선하여 設置하도록 하여 電源開發事業의 圓滑한 施行을 支援하도록 하였다. (法第13條)

카) 資金의 支援

政府는 電源開發事業의 圓滑한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그 所要資金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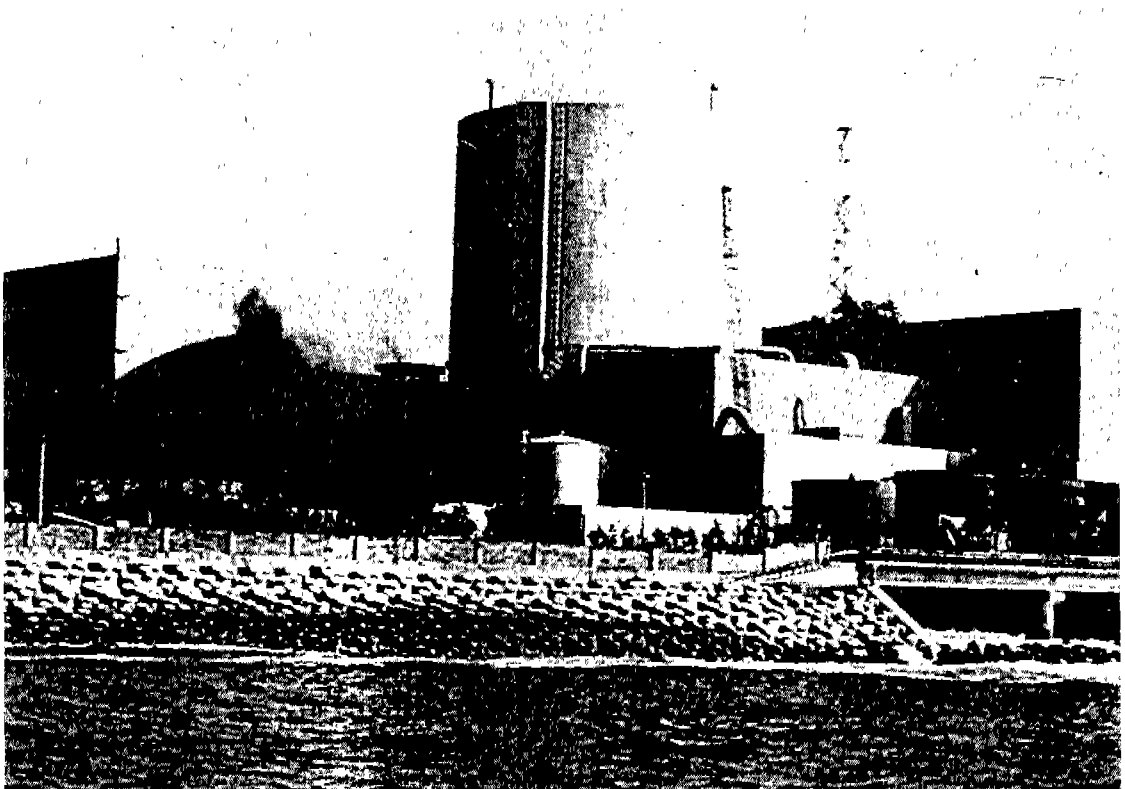
電源開發事業은 龍大한 資金이 所要되므로

電源開發事業者의 自體財源만으로는 그 調達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政府가 이를 支援하도록 함으로써 電源開發事業의 蹉跌없는 遂行을 圖謀코자 하는 것이다. (法第15條)

3. 結 言

이상에서 簡略하게 說明한 바와 같이 이 法은 電源開發事業의 重要性에 立脚하여 節次簡素化를 통한 電源開發事業의 圓滑한 推進을 圖謀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만큼 行政官廳, 國民과 電源開發事業者는 다같이 그 立法趣旨를 十分 理解하여 相互協調함으로써 國家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古里原子力發電所]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

第1條 (目 的) 이 법은 電源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함으로써 電力需給의 安定을 도모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奇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 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電源設備”라 함은 發電 및 送 · 變電을 위한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과 그 附帶施設을 말한다.
2. “電源開發事業”이라 함은 電源設備를 設置 또는 改良하는 事業을 말한다.
3.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이라 함은 政府의 電源開發計劃에 따른 電源開發事業의 實施에 관한 細部計劃을 말한다.

第3條 (電源開發事業者) ① 電源開發事業은 韓國電力株式會社法에 의한 韓國電力株式會社가 施行한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電源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業의 一部를 第1項에 規定한 者이외의 者로 하여금 施行하게 할 수 있다.

第4條 (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 ① 電源開發事業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動力資源부에 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의 構成 · 機能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①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實施計

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源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源設備의 概要
2. 電源開發事業區域의 位置 및 面積
3. 電源開發事業의 施行期間
4. 所要資金 및 그 調達에 관한 事項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設置 및 費用負擔에 관한 事項
6. 國土自然環境保全에 관한 事項
7. 기타 電源開發事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④ 動力資源部長官이 節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⑤ 動力資源部長官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部處의 長과 協議하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電源開發事業

자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決定 또는 人정을 보았거나 協議를 한 것으로 본다.

1. 都市計劃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施設의 決定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의 許可
2. 土地收用法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인정.
3. 道路法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4. 私道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5. 河川法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の 占用許可
6. 公有水面管理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占用 및 사용의 許可
7. 公有水面埋立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免許
8. 水道法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敷設의 認可
9. 公園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사용의 許可 및 同法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의 占用·사용의 許可
10. 國土利用管理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地域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同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地域안에서의 行爲 許可
11. 農地の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の 許可
12. 農地擴大開發促進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開發促進地域안에서의 行爲 許可 및 同法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の 許可
13. 山林法第10條·第24條 및 第48條의 規定

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와 同法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林의 貸付 또는 사용 許可

14. 林產物團束에 관한 法律第2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15. 砂防事業法第20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砂防指定地의 解除
16. 電氣事業法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許可事項의 變更許可
17. 軍事施設保護法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기타 處分에 관한 協議

②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이 있는 후 電源開發事業자가 電源開發事業區域 안에서 協議에 의하여 買収한 土地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適用에 있어서 土地收用法에 의한 收用に 의하여 買収한 것으로 본다.

③ 電源開發事業자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후 土地收用法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區域안의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物件이나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物件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鑛業權·漁業權·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 (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함에 있어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의 裁決의 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第25條第2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5條第3項第3號에 規定한 電源開發事業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第7條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 관계 行政廳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이 있는 후 電源開發事業區域 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에 관한 許可 기타의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행하는 事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道路·鐵道·橋梁·運河·水道 및 水路 등과 그 附屬物의 設置
2. 河川流水의 進路變更 河川 또는 海面의 埋立과 浚渫, 港灣의 築造 또는 變更 및 漁業權의 設定
3. 建築物의 新築·增築 또는 改築
4. 土地의 開墾, 地盤의 掘鑿, 埋立 기타 土地形質의 變更

第8條 (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① 電源開發事業區域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는 電源開發事業 이외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기타의 處分을 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電源開發事業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

第9條 (土地등의 買收의 委託)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用 土地등의 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10條 (移住對策) ①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生活의 根據를 喪失하게 되는 者(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移住對策을 樹立 實施하여야 한다.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住對策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移住對策의 實施에 따른 住宅地의 造成 및 住宅의 建設에 대하여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資金을 他에 優先하여 支援한다.

④ 電源開發事業者는 移住者를 위한 土地등의 買收 및 移住對策의 樹立實施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

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11條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의 指定告示)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電源開發事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動力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部處의 뜻과 協議하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第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2條 (土地등의 買收請求) ①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의 指定·告示가 있는 때에는 同區域안의 土地所有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건이라도 電源開發事業者에게 土地등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買收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買收하여야 한다.

③ 第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안의 土地所有者가 電源開發事業者에게 賣渡하는 土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者에게 土地등을 賣渡함으로써 인하여 移住하게 되는 者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者로 본다.

第13條 (公共施設의 優先設置) 電源開發事業과 관련되는 道路·橋梁·港灣·水道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主管하는 관계 行政廳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이 있는 때에는 電源開發事業을 圓滑히 施行할 수 있도록 당해 公共施設을 優先的으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行政廳은 電源開發事業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公共施設의 設置를 電源開發事業者에게 委託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 (土地 등의 讓渡) 電源開發事業者가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管理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歸屬되고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으로 既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새로운 公共施設을 設置한 경우에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당해 電源開發事業者가 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電源開發事

業者에게 無償으로 讓渡할 수 있다.

第15條 (資金의 支援) 政府는 電源開發事業의 圓滑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源開發事業者에게 그 所要資金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第16條 (書類의 公示送達)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에 따른 利害關係人の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書類의 送達에 갈음하여 公示할 수 있다.

第17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대통령령제9,252호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 함은 전원설비의 설치·운용을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이에는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 또는 사력채취구역이 포함된다.

제3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건물·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과 제1호의 시설의 설치·운용을 위한 용수(생활용수·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 시설·송유시설·회처리장·재료처리장과 그 부속시설
3.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제4조 (전원개발사업자)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동력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2. 내무부 지방행정차관보
3. 재무부 재정차관보
4. 국방부 군수차관보
5. 농수산부 농산차관보
6.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장
7.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8.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9. 교통부 기획관리실장
10.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11.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명하는 원자력위원(상임위원)중 1인
12. 산림청 차장
13. 수산청 차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로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전까지(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전원설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2.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

· 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 5 조 제 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전원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동일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전원 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의 변경
3. 지형사정,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등으로 인한 구역변경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 1 항 각호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력자원부장관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 내용이 법 제 6 조 제 1 항 제 17 호의 협의사항에 관계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항) ① 법 제 5 조 제 3 항 제 2 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 지적도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 5 조 제 3 항 제 6 호의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경보전법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 5 조 제 3 항 제 7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④ 제 3 항의 규정은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 철탑부지 이외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실시 계획승인의 고시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 5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열람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

적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제 16 조 제 1 항 각호의 사항과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18 조 (협의절차) ①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 5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의견을 회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의견의 회송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5 호의 규정중 도로 및 하천의 점용과 법 제 6 조 제 1 항 제 10 호 내지 제 14 호 및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제 21 조 (이주대책) ① 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 10 조 제 2 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제 20 조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2 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등)

① 법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동력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 1 항 각호의 사항에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에 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제23조 (매수의 청구등)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지목 및 지적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시설등) ① 법 제1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철도·통신시설·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청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토지등의 양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는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